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성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16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5일
발 의 자: 김성준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동길, 곽향기, 김 경, 김경훈, 김영철, 김지향, 박강산, 박수빈, 박승진, 서준오, 송도호, 오금란, 유정희, 윤영희, 이상욱, 이상훈, 이승미, 이영실, 이용균, 이원형, 이종환, 임규호, 임만균, 전병주, 최기찬, 최재란, 한 신 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서울시 시내버스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는 전기버스, 수소버스로 교체·도입되고 있는 바, 특히 전기버스로의 전환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음.
- 향후 전기버스 사용 후 배터리의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신규 시내버스(전기버스) 선정 시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, 자원의 낭비를 막고 전기버스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, 재활용, 재제조 산업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사업자가 전기버스를 신규 시내버스로 도입하는 경우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(제9조 제8항 신설)
- 나. 사업자는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버스를 도입하도록 협조할 것을 규정함.(제10조 제3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, 대기환경보전법 ,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시장의 책무) ⑧ 시장은 사업자가 제6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신규 시내버스로 도입하는 경우, ‘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’의 전기승합차 보조금 산출방식에 따른 배터리 에너지밀도 구간 등급 및 배터리 재활용 가치 지표 구간 등급이 2등급 이상인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1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사업자의 책무) ③ 사업자는 신규 시내버스로 제9조 제8항에 따른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⑦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9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<u>⑧ 시장은 사업자가 제6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신규 시내버스로 도입하는 경우, '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'의 전기승합차 보조금 산출방식에 따른 배터리 에너지밀도 구간 등급 및 배터리 재활용 가치 지표 구간 등급이 2등급 이상인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0조(사업자의 책무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10조(사업자의 책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사업자는 신규 시내버스로 제9조 제8항에 따른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(시장의 책무) 제8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-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(시장의 책무) 제8항을 신설하여, 사업자가 전기버스를 신규 시내버스로 도입하는 경우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시책의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